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52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이재강 · 박지혜 · 박지원
이용선 · 한준호 · 추미애
민홍철 · 오세희 · 조정식
김태년 · 양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부재한 상황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사소송의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현재 대한민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중 가장 많고, 특히 가정법원의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과 일부 가정법원(부산, 울산, 광주)보다도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또한 개인회생 사건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9,286건으로 올해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고, 법인파산 사건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서울, 수원, 부산에 위치한 회생법원보다도 평균 1.5배 이상이 소요되어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됨.

이에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사법 행정적 과다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별표1, 별표5 및 별표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의정부지방법원란 다음에 의정부가정법원란 및 의정부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시	
	의정부회생법원		의정부시	

별표 1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란, 남양주지원란 다음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란, 남양주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고양시
--------------	-----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	------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란의 서울가정법원란 다음에 의정부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정부		의정부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 군 외에 고양시 · 파주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
	고양	고양시 · 파주시
	남양주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

별표 10 중 서울고등법원란의 서울회생법원란 다음에 의정부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정부	의정부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포천시 · 고양시 · 파주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및 남양주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및 남양주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의정부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의정부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